중급회계 - 7판

해설 및 해답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Chapter 1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객관식 문제

01. ③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이다.

02. 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정하여 통일된 지침이 존재하여야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고(이해가능성), 믿을 수 있으며(신뢰성), 기업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비교가능성). 결국,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03. ⑤

국제회계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의 회계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를 지향한다.

Chapter 2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11)

02. O (개념체계, 문단 QC11)

03. O (개념체계, 문단 QC16)

04. X (개념체계, 문단 4.13)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관련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05. X (개념체계, 문단 4.30)

차익도 경제적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과 차이가 없다.

06. O (개념체계, 문단 4.50)

07. O (개념체계, 문단 4.61)

객관식 문제

01.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02. ⑤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이 아니다. 기업이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03. 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검증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04. ③

현행대체원가가 역사적 원가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이다.

05. ③

중요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속하지 않는다.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의 일부로서 설명되고 있다.

06. ④

계속성은 이익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변경을 억제하고, 회계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된다.

07. ④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08. ⑤

⑤번 문항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09. ④

② 물리적 형태가 없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다(무형자산).

③ 자산의 유무는 법적 소유권의 유무가 아니라 경제적효익에 대한 지배력 유무에 따른다.

④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 자산이 창출될 수는 없으므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⑤ 증여받은 재화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10. ④

①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하자에 대하여 회사가 보증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면 이미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부채가 될 수 있다.

② 미래 일정시점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단순한 약정만으로는 경제적효익의 희생을 수반하는 의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③ 경제적효익의 희생은 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의무로의 대체, 자본으로의 전환 및 채권의 포기나 권리의 상실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해 소멸되기도 한다.

④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의무(예: 미래의 대규모 수선 등)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⑤ 부채의 액면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을 필요로 하더라도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11. ④

역사적원가 :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12. ②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3. ④

자본유지개념에 따른 당기순이익 계산문제이다.

기초순자산 + 추가출자 − 출자의 환급 + 총포괄이익 = 기말순자산

(₩25,865,000 − 16,484,000) + 1,200,000 − 400,000 + 총포괄이익 = (27,285,000 − 15,129,000)

∴ 총포괄이익 = ₩1,975,000

주식배당은 순자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으로서 이미 총포괄이익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을 질문하였으므로 총포괄이익에서 금융자산평가이익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당기순이익 = ₩1,975,000 − 100,000 = ₩1,875,000

Chapter 3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16)

02.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25)

03.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35)

04. X (기준서 제1001호, 문단 38)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다면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05. X (기준서 제1001호, 문단 60)

유동성 /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다.

06.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66, 68)

07.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73)

08.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87)

09. O (기준서 제1001호, 문단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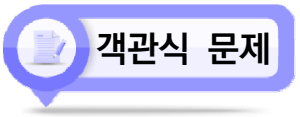

01. ④

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02. ④

$$\text{매출채권회전율} = \frac{₩960,000}{₩40,000} = 24\text{회}$$

$$\text{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 = 360\text{일} \div 24\text{회} = 15\text{일}$$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768,000}{₩38,400} = 20\text{회}$$

$$\text{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 360\text{일} \div 20\text{회} = 18\text{일}$$

$$\text{정상영업주기} = 15\text{일} + 18\text{일} = 33\text{일}$$

03. ⑤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04. 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05. ④

조정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4).

Chapter 4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01.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1)

이러한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02.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3)

03.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4)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04.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9)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05.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21)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수적인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비용은 당기손익을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06.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23)

07.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24, 26)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중 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결정한다.

08. X (기준서 제1016호, 문단 39, 40)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를 인식할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증가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또한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를 인식할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 재평가증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감소액을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한다.

09.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36, 37)

10.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1, 61)

11.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9)

12. O (기준서 제1016호, 문단 7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01. X (기준서 제1023호, 문단 7)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02. X (기준서 제1023호, 문단 8)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금 등의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해야 한다.

03. X (기준서 제1023호, 문단 12, 14)

일시적 운용으로 인한 투자수익은 특정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에서만 차감한다.

04. O (기준서 제1023호, 문단 18)

05. O (기준서 제1023호, 문단 19)

06. O (기준서 제1023호, 문단 21)

07. X (기준서 제1023호, 문단 24)

여러 부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서 자본화를 종료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01. X (기준서 제1036호, 문단 8)

초과액의 중요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02. O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

03. O (기준서 제1036호, 문단 22)

04. X (기준서 제1036호, 문단 30, 50, 55)

할인율은 세전할인율을 사용한다.

05. O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1)

06. X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4)

현금창출단위에서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킨 후, 잔여액을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07. X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19, 124)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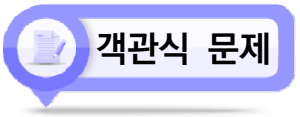

01. ③

<20×1. 1. 1. 철거시>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고 ₩50,000의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20×1. 12. 31. 철거시>

20×1. 1. 1.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취득원가 = ₩1,100,000 × 1/10 = ₩110,000

20×1년도 건물 감가상각비 = ₩110,000 ÷ 5년 = ₩22,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미상각장부금액 + 철거비용

= ₩110,000 − 22,000 + 50,000 = ₩138,000

참고로 20×1년 말 건물 철거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2,000	(대)	건 물	11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38,000		현 금	50,000

02. ⑤

기계장치 취득원가 = ₩5,000,000 + 1,000,000 × 2.4018 = ₩7,401,800

20×1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7,401,800 ÷ 5년 = ₩1,480,360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20×1년도 이자비용 = ₩2,401,800(기초장부금액) × 12% = ₩288,216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20×1년 말 장기미지급금 장부금액 = ₩2,401,800 − (1,000,000 − 288,216) = ₩1,690,016

03. ④

(1)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0	(대)	차량운반구(구)	40,000,000
	차량운반구(신)	47,000,000		현 금	3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

(2)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0	(대)	차량운반구(구)	40,000,000
	차량운반구(신)	45,000,000		현 금	30,000,000

04. ③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토지 취득 직후 철거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토지만의 취득에 해당한다. 이 때 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토지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한편 조경공사비 · 배수시설 공사비 등은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라면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구축물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는 구축물 등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진입도로 및 상 · 하수도의 사후 유지 · 관리를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 ₩1,000,000 + 50,000 + 80,000 + 150,000 − 30,000 + 35,000 + 25,000
+ 12,000 + 28,000 = ₩1,350,000
건물 : ₩5,000 + 63,000 + 45,000 + 2,875,000 + 20,000 = ₩3,008,000

05. ③

자산 취득시 부수해서 채권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이며,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 때 당해 채권을 계속 보유하든, 즉시 할인매각하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투자채권의 현재가치 = ₩20,000,000 × 0.68 + 200,000 × 3.99 = ₩14,398,000
건물의 취득원가 = 건물 취득대가 + 부수취득채권의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 ₩80,000,000 + (20,000,000 − 14,398,000) = ₩85,602,000
감가상각비 = ₩85,602,000 ÷ 10년 = ₩8,560,200
이자수익 = ₩14,398,000(채권의 기초장부금액) × 8% = ₩1,151,840

06. ④

구축물 취득원가 = ₩2,000,000 + 3,000,000 × 0.8396 + 500,000 × 0.5584 = ₩4,798,000
감가상각비 = ₩4,798,000 ÷ 10년 = ₩479,800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 ₩500,000 × 0.5584 × 6% = ₩16,752
비용 합계 = ₩496,552

07. ④

(1) 20×2년 건물에 대한 평균지출액

일 자	지출액	자본화대상기간	평균지출액
20×1. 1. 1	₩180,000	6/12	₩90,000
20×2. 1. 1	70,000	6/12	35,000
	₩250,000		₩125,000

(2)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

차입금	차입금액	차입기간	연평균차입액	이자율	이자비용
B	₩60,000	12/12	₩60,000	8%	₩4,800
C	80,000	12/12	80,000	11.5	9,200
			₩140,000		₩14,000

자본화이자율 : $\frac{₩14,000}{₩140,000} = 10\%$

(3) 자본화할 차입원가(20×2년)

① 특정차입금 : ₩50,000 × 6/12 × 12% = ₩3,000

② 일반차입금(한도 : ₩14,000) : (₩125,000 − 50,000 × 6/12) × 10% = ₩10,000

③ 자본화할 차입원가(① + ②) : ₩3,000 + 10,000 = ₩13,000

(4) 건물의 취득원가 : ₩180,000 + 70,000 + 19,000 + 13,000 = ₩282,000

08. ④

생산량비례법(20×0년) : (₩6,000,000 − 400,000) × 46,000/500,000 = ₩515,200

연수합계법(20×1년) : ₩5,600,000 × (8/36 × 3/12 + 7/36 × 9/12) = ₩1,127,778

09. ⑤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의무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⑤

(1)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00 − 0) × 1/10 = ₩200,000

재평가잉여금 : ₩1,890,000 − 1,800,000(감가상각후 장부금액) = ₩90,000

(2) 20×2년

감가상각비 : (₩1,890,000 − 0) × 1/9 = ₩210,000

재평가손실(당기비용) : ₩1,680,000(장부금액) − 1,450,000 − 90,000(기타포괄이익)
= ₩140,000

∴ 20×2년 비용총액 : ₩210,000 + 140,000 = ₩350,000

11. ④

(1) 일자별 회계처리

<20×1. 1. 1.>

(차) 차량운반구	200,000	(대) 현금	200,000

<20×1. 12. 31.>

(차) 감가상각비	4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	(대) 차량운반구	20,000
		재평가잉여금	20,000

<20×2. 12. 31.>

(차) 감가상각비	4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5,000
(차) 재평가잉여금	5,000	(대) 이익잉여금	5,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45,000	(대) 차량운반구	120,000
재평가잉여금	15,000		
재평가손실	60,000		

(2)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 인식 금액 : ₩45,000 + 60,000 = ₩105,000

12. ④

일반적으로 자산의 기중 취득시 취득월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기중 처분시 처분월을 제외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20×1년도 감가상각비 : (₩4,000,000 − 400,000) × 5/15 × 1/2 = ₩600,000

20×2년도 감가상각비 : (₩4,000,000 − 400,000) × 5/15 × 1/2

+ (4,000,000 − 400,000) × 4/15 × 1/2 = ₩1,080,000

20×3년도 3개월분 감가상각비 : (₩4,000,000 − 400,000) × 4/15 × 3/12 = ₩240,000

20×3년도 4월초 장부금액 : ₩4,000,000 − (600,000 + 1,080,000 + 240,000) = ₩2,080,000

처분시 현금수령액 : ₩2,080,000 − 120,000(처분손실) = ₩1,960,000

13. ④

20×1년 말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 ₩1,000,000 − 200,000 = ₩800,000

회수가능액 = ₩720,000

₩720,000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720,000임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20,000 − 720,000 ÷ 4년 = ₩540,000

회수가능액 = ₩620,000 > 환입한도 = ₩600,000(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될 기말 장부금액)

따라서 손상차손환입 = ₩600,000 − 540,000 = ₩60,000

14. ③

20×1년말 재평가잉여금 = ₩860,000 − 800,000(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60,000

20×2년말 재평가전 장부금액 = ₩860,000 − 860,000 ÷ 4년 = ₩645,000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 = ₩610,000 − 645,000

= ₩(−)35,000 (재평가잉여금 감소로 처리)

손상으로 인한 감소 = ₩570,000−610,000 = ₩(−)40,000

재평가잉여금 ₩25,000 감소 및 손상차손(당기손익) ₩15,000 인식

Chapter 5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01. O (기준서 제1040호, 문단 8)

02. O (기준서 제1040호, 문단 8)

03. O (기준서 제1040호, 문단 10)

04. X (기준서 제1040호, 문단 30, 53)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05. X (기준서 제1040호, 문단 61, 63)

재고자산 대체의 경우에는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자가사용부동산의 대체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재평가회계처리를 적용하므로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01. X (기준서 제1041호, 문단 12, 13)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서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재고자산 등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02. X (기준서 제1041호, 문단 30)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03. O (기준서 제1041호, 문단 26)

04. X (기준서 제1041호, 문단 32)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객관식 문제

01. ⑤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제공자의 재무상태표에서 리스채권으로 대체했을 것이므로 투자부동산이 표시되지 않는다.

02. ③

③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거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03. ⑤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4. ④

원가모형 적용시 감가상각비 = ₩5,000,000 ÷ 20 = ₩250,000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평가이익 = ₩5,100,000 − 5,000,000 = ₩100,000(감가상각비 인식 없음)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350,000 더 많다.

05. ①

(1)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20×2년 감가상각비 : (₩10,000 − 0)×1/10 = ₩1,000

(2)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20×1. 12. 31>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10,000 − 0) ÷ 10년 = ₩1,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	(대) 재평가잉여금	1,800
건물	800		

* ₩10,800 − 9,000 = ₩1,800

<20×2. 12. 31>

(차) 감 가 상 각 비	1,2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

* (₩10,800－0)÷9년＝₩1,200

(차) 재 평 가 잉 여 금	200	(대) 이 익 잉 여 금	200

* ₩1,200－1,000＝₩2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	(대) 건 물	2,000
재 평 가 잉 여 금	800		

* ₩10,800－8,800＝₩2,000

(3)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20×2년 평가손실 : ₩10,800－8,800＝₩2,000

06.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은 수확시점 이후이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07. ⑤

(1) 일자별 회계처리

<20×1. 1. 1.>

(차) 생 물 자 산	7,500,000	(대) 현 금	7,500,000

<20×1. 10. 31.>

(차) 수 확 물	1,000,000	(대) 수확물평가이익	1,000,000

<20×1. 11. 1.>

(차) 현 금	1,200,000	(대) 매 출	1,200,000
매 출 원 가	1,000,000	수 확 물	1,000,000

<20×1. 11. 30.>

(차) 생 물 자 산	600,000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600,000

<20×1. 12. 31.>

(차) 수 확 물	1,100,000	(대) 수확물평가이익	1,100,000
(차) 생 물 자 산	250,000(1)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250,000

(1) 5마리 × (₩1,550,000 − 1,500,000) = ₩250,000

(차) 생물자산평가손실	40,000	(대) 생 물 자 산	40,000(2)

(2) 2마리 × (₩280,000 − 300,000) = ₩40,000

(2)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증가금액

₩1,000,000 + 1,200,000 − 1,000,000 + 600,000 + 1,100,000 + 250,000 − 40,000
= ₩3,110,000

Chapter 6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

02. X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6)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03.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30)

04. X (기준서 제1038호, 문단 34)

피취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하다면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05. X (기준서 제1038호, 문단 44)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명목상 금액(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포함)으로 인식한다.

06.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45)

07.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48)

08. X (기준서 제1038호, 문단 54, 57)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특정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09.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63)

10.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71, 77)

11.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94)

12.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2, 104)

13.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9)

14. O (기준서 제1038호, 문단 117)

객관식 문제

01. ②

① 무형자산은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③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손상기준서에 따라 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영(0)으로 보지 않는다.

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02. ②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기준서 제1038호 문단 71).

03. ①

(1) 20×6년 말 개발비

₩90,000 − 90,000 × 1/5 × 3/12 = ₩85,500

(2) 20×6년 말 산업재산권 : ₩6,000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대체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 문제는 2007년도 기출문제인데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 오류는 개발활동관련 지출액 ₩90,000이 20×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지출된 금액인지 언급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개발비의 사용가능시점을 언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상각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①번 문항을 제외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제 시험장에서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오류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음을 부언한다.

04. ③

<20×2년>

(차)	개	발	비	5,000,000	(대)	현	금	5,000,000

<20×3년>

(차)	개	발	비	7,000,000	(대)	현	금	7,000,000

<20×3년 12월 31일>

(차) 무형자산상각비 300,000 (대) 개 발 비 300,000

* ₩12,000,000 ÷ 10년 × 3/12 = ₩300,000

<20×4년 12월 31일>

(차) 무형자산상각비 1,200,000 (대) 개 발 비 1,200,000

* ₩12,000,000 ÷ 10년 = ₩1,200,000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2,100,000 (대) 개 발 비 2,100,000

* ₩8,400,000 − (12,000,000 − 300,000 − 1,200,000) = ₩(2,100,000)

<20×5년 12월 31일>

(차) 무형자산상각비 960,000 (대) 개 발 비 960,000

* ₩8,400,000 × 12개월 ÷ 105개월 = ₩960,000

(차) 개 발 비 1,860,000 (대)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860,000

* ₩9,300,000 − (8,400,000 − 960,000) = ₩1,860,000

(한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12,000,000 − 12,000,000 ÷ 10년 × (2 + 3/12) = ₩9,300,000

Chapter 7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8, 19)

02. X (기준서 제1002호, 문단 13)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한다.

03. X (기준서 제1002호, 문단 15)
특정고객을 위한 비제조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04.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18)

05.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20)

06. X (기준서 제1002호, 문단 25)
후입선출법은 적용할 수 없다.

07.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25)

08.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29)

09. O (기준서 제1002호, 문단 32)

객관식 문제

01. ⑤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제품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분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02. ②

(1) 기말재고금액 : ₩50,000 + 100,000 × 40% + 20,000 + 40,000 + 20,000 = ₩170,000

(2) 매출원가 : ₩100,000 + 500,000 − 170,000 = ₩430,000

03. ①

실지재고조사법하에서의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이다.

총평균단가 = (₩10,000 + 22,000 + 12,000) ÷ (1,000개 + 2,000 + 1,000) = ₩11

매출원가 = 2,000개 × ₩11 = ₩22,000

계속기록법하에서의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다.

2월 20일 현재 이동평균단가 = (₩10,000 + 22,000) ÷ (1,000개 + 2,000) = ₩10.67

매출원가 = 2,000개 × ₩10.67 = ₩21,340 ≒ ₩21,333

04. ④

기초재고자산금액(1,240,000)			매출원가(24,255,000)
당기재고자산매입액(24,380,000)	=		재고자산감모손실(기타비용)(75,000)[2]
			기말재고자산금액(1,290,000)[1]

(1) 기말재고 : 900 × 850 + 750 × 700 = 1,290,000

(2) 재고자산감모손실 : (100 × 900 + 50 × 700) × 60% = 75,000

05. ①

	원 가	매 가
기 초 재 고	₩360,000	₩560,000
순 매 입 액	2,340,000	3,360,000
순 인 상 액		230,000
순 인 하 액		(60,000)
비정상적감모	(35,000)	(50,000)
계	₩2,665,000	₩4,040,000
총 매 출 액		₩(2,220,000)
정 상 적 감 모		(20,000)
종 업 원 할 인		(80,000)
기말재고(매가)		₩1,720,000

(1) 원가율(저가기준 평균법) = ₩2,665,000/(₩4,040,000 + 60,000) = 65%
(2) 기말재고(원가) = ₩1,720,000 × 65% = ₩1,118,000
(3) 매출원가 = ₩2,665,000 − 1,118,000 = ₩1,547,000
(4) 매출총이익 = ₩2,220,000 − 1,547,000 = ₩673,000

06. ②

기초매출채권(₩2,000,000) + 총매출액
= 현금회수액(₩7,000,000) + 매출할인(₩10,000) + 8.21. 매출채권잔액(₩2,400,000)
∴ 총매출액 = ₩7,410,000

순매출액 = ₩7,410,000 − 10,000(매출할인) = ₩7,400,000
매출원가 = ₩7,400,000 × (1 − 20%) = ₩5,920,000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8.21. 현재 재고자산
₩500,000 + (6,300,000 − 10,000*) = ₩5,920,000 + 8.21. 현재 재고자산

* FOB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 중인 운송상품 ₩10,000은 당기 매입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회사가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재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당기 매입액에서 제외한다.

∴ 8. 21. 현재 재고자산 = ₩870,000
재고자산 손실액 = ₩870,000 − 200,000(처분가치) = ₩670,000

07. ④

(1) 20×1년 말 기말재고금액

기말재고 실사금액	₩200,000
① 담보제공 재고자산	100,000
② 위탁품	300,000
수정후 기말재고	₩600,000

(2) 20×1년 6월 말 재고자산화재손실

① 20×1년 기초재고 : ₩450,000

② 20×1년 기초부터 6월 말까지 매입액 : ₩2,300,000－150,000＝₩2,150,000

③ 20×1년 기초부터 6월 말까지 매출액 : ₩3,000,000－200,000＝₩2,800,000

④ 20×0년 매출원가율 : ₩6,400,000/8,000,000＝80%

⑤ 20×1년 기초부터 6월 말까지 매출원가 추정 : ₩2,800,000×80%＝₩2,240,000

⑥ 20×1년 6월 말 재고자산 추정 : ₩450,000＋2,150,000－2,240,000＝₩360,000

⑦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전액 소실되었으므로 ₩360,000이 화재손실 금액이다.

Chapter 8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01. X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1~4.1.5)

회사의 사업모형이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자산의 매도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02. X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4)

단기매매목적도 아니고 조건부대가 아닌 지분상품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다.

03. X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한 경우(지분상품)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04. O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

05. O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2)

손상차손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평가손익)과 상계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06. X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1~5.4.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라면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맞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이라면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임에 유의해야 한다.

07. O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5)

08. X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

금융자산을 양도하였는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자산을 통제할 경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며, 당해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제거한다.

객관식 문제

01. ①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02.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매매수수료 ₩200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최초 인식금액 ₩10,000과 기말 공정가치 ₩11,000의 차이 ₩1,000의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순액) ₩800 증가의 영향을 준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매매수수료 ₩200을 포함한 ₩10,200으로 최초 인식하고, 기말 공정가치 ₩11,000의 차이 ₩800의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03.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금융자산은 이를 제거하기 직전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금융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04. ④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20×1년 말 장부금액＝₩860,000＋860,000×6%－30,000＝₩881,600

처분이익＝₩883,000－881,600＝₩1,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와 처분손익이 동일하다.

05. ①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변동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⑤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지분상품만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없다.

06. ⑤

사업모형의 변경은 재분류일(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회계처리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AC 금융자산	66,000	(대)	FVOCI 금융자산	65,000
	금융자산평가이익(OCI)	4,000		AC 금융자산	5,000

07. ③

기준서 제1039호 문단 20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을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인식한다.

08. ③

(1) 일자별 회계처리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 10. 7.>

(차)	FVPL 금융자산	3,000,000	(대)	현 금	3,030,000
	수수료비용	30,000			

<20×3. 12. 31.>

(차)	FVPL 금융자산	500,000	(대)	평가이익(당기손익)	500,000

* ₩3,500,000 − 3,000,000 = ₩500,000

<20×4. 1. 20.>

(차)	현 금	3,350,000	(대)	FVPL 금융자산	3,500,000
	처분관련손실	150,000			

* ₩3,400,000 − 50,000 = ₩3,350,000

(2) 일자별 회계처리 (FV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 10. 7.>

(차)	FVOCI 선택 금융자산	3,030,000	(대)	현 금	3,030,000

<20×3. 12. 31.>

(차) FVOCI 선택 금융자산 470,000 (대)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470,000

* ₩3,500,000－3,030,000＝₩470,000

<20×4. 1. 20.>

(차)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 (대) FVOCI 선택 금융자산 100,000

(차) 현 금 3,350,000 (대) FVOCI 선택 금융자산 3,400,000

비 용 50,000

* ₩3,400,000－50,000＝₩3,350,000

Chapter 9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01.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8)

02.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21)

03. X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1)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우선 결정한 후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으로 결정한다.

04. X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8)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행일에 구분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배분금액에 비례하여 두 가지 요소로 배분한다.

05.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41)

06.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3, AG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01. X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이외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02. X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 중 지속적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등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회계처리를 적용한다(1109:3.2.16, 4.2.1).

03. X

조건을 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것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것보다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한다면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109:5.7.7,5.7.8).

04. O (1109:3.3.2)

05. O

금융자산과 달리 금융부채는 재분류할 수 없다.

객관식 문제

01. ③

① 사채가 할인발행되면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액면가액에 수렴하므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한다. 반면, 사채가 할증발행되면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감소하여 액면가액에 수렴하므로 이자비용도 매년 감소한다.

② 사채의 장부금액은 변동되지만 정액법에 의한 이자비용은 매년 일정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매년 변동한다.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매년 감소하며, 할증발행의 경우에는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감소하므로 이자율은 매년 증가한다.

③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④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차금에 대한 정액법 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사채발행비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하여 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므로 정액법 상각은 잘못된 설명이다.

02. ①

20×4. 1. 1. 발행가액 = ₩6,000 × 1.7833 + 100,000 × 0.8573 = ₩96,430

20×4. 3. 1. 발행가액 = ₩96,430 + 96,430 × 8% × 2/12 − 100,000 × 6% × 2/12 = ₩96,716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 − 96,716 = ₩3,284

<20×4. 3. 1.>

(차)	현 금	97,716	(대)	사 채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284		미 지 급 이 자	1,000(1)

(1) ₩100,000 × 6% × 2/12 = ₩1,000(경과이자)

<20×4. 12. 31.>

(차)	이 자 비 용	6,429(2)	(대)	현 금	6,000
	미 지 급 이 자	1,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9(1)

(2) ₩96,430 × 8% × 10/12 = ₩6,429

<20×5. 12. 31.>

(차)	이 자 비 용	7,855(3)	(대)	현 금	6,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855(1)

(3) (₩96,716 + 1,429) × 8% = ₩7,852

₩3은 단수차이

03. ⑤

<미래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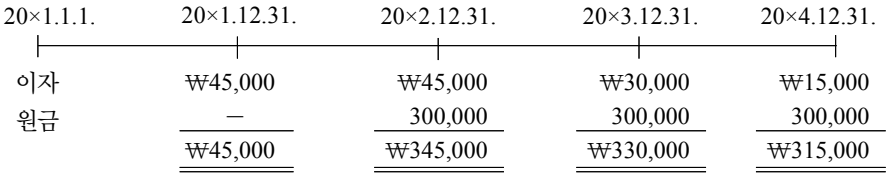

사채의 발행가액 = ₩45,000 × 0.935 + 345,000 × 0.873 + 330,000 × 0.816 + 315,000 × 0.763
= ₩852,885

20×1년 말 사채장부금액 = ₩852,885 + 852,885 × 7% − 45,000 = ₩867,587

20×2년도 이자비용 = ₩867,587 × 7% = ₩60,731

20×2년 말 사채장부금액 = ₩867,587 + 60,731 − 45,000 − 300,000 = ₩583,318

04. ③

(1) 20×1년 1월 1일 현재가치(10%)

₩1,000,000×0.7513＋60,000×2.4868＝₩900,508

(2) 20×1년 4월 1일 상각후원가(10%)

₩900,508＋(90,051－60,000)×3/12＝₩908,021

(3)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할 경우 사채발행비는 당기비용처리해야 하므로 20×1년 4월 1일 상각후원가는 그대로 ₩908,021이다.

(4) AC 금융부채로 분류할 경우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야 하므로 20×1년 4월 1일 상각후원가는 ₩898,021(＝₩908,021－10,000)이다.

05. ②

20×5. 1. 1. 발행가액 = ₩1,000,000 × 0.889 + 50,000 × 2.7751 = ₩1,027,755

20×5. 12. 31. 장부금액 = ₩1,027,755 + 1,027,755 × 4% − 50,000 = ₩1,018,865

20×6. 12. 31. 사채이자 = ₩1,018,865 × 4% = ₩40,755

20×6. 12. 31. 장부금액 = ₩1,018,865 + 40,755 − 50,000 = ₩1,009,620

20×6. 12. 31. 사채상환이익 = ₩1,009,620 − 990,570(상환가액) = ₩19,050

20×5. 12. 31. 현재 시장이자율은 5%이며, 이는 표시이자율과 일치하므로 사채의 시장가치는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한편 발행일 이후 시장이자율이 변동되면 사채의 시장가치도 변동되나 사채의 장부금액은 발행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므로 발행자가 부담할 이자율은 동일하다.

06. ④

자기사채 취득 후 이를 재발행하는 거래는 사채의 신규발행과 회계처리가 동일하며, 이 때 자기사채 재발행 시점이 이자지급일 사이라면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발행가액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20×1. 1. 1. 사채의 발행가액 = ₩50,000 × (0.926 + 0.857 + 0.794) + 1,000,000 × 0.794
= ₩922,850

20×1. 12. 31. 장부금액 = ₩922,850 + 922,850 × 8% − 50,000 = ₩946,678

<20×2. 4. 1. 이자비용>

(차)	이 자 비 용	18,934	(대)	미 지 급 이 자	12,500
				사채할인발행차금	6,434

<20×2. 4. 1. 자기사채 취득>

(차)	사 채	1,000,000	(대)	현 금	960,000
	미 지 급 이 자	12,500		사채할인발행차금	46,888
				사 채 상 환 이 익	5,612

<20×2. 5. 1. 자기사채 재발행>

(차)	현 금	965,00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1,667		미 지 급 이 자	16,667(1)

(1) 4개월 경과이자

한편, 20×2년 5월 1일 발행가액 ₩948,333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고, 동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20×2년도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07. ③

1. 사채상환할증금 : ₩1,000,000 × (8% − 4%) × 3.2464 = ₩129,856
2. 전환권대가
   (1)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이자의 현재가치 : ₩40,000 × 2.4018	=	₩96,072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 × 0.7118	=	711,80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129,856 × 0.7118	=	92,432
계		₩900,304

   (2) 전환권대가 : ₩950,000 − 900,304 = ₩49,696

08. ④

1. 상환할증금 : ₩3,000,000 × (6% − 4%) × (6%, 3년 연금의 미래가치) = ₩191,016

2. 전환사채의 현재가치

원금의 현재가치 : ₩3,000,000 × 0.79383	=	₩2,381,490
이자의 현재가치 : ₩120,000 × 2.57710	=	309,252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191,016 × 0.79383	=	151,634
계		₩2,842,376

3. 20×5년 이자비용 : ₩2,842,376 × 8% = ₩227,390

09. ⑤

(1) 전환사채의 현재가치

이자의 현재가치 : ₩50,000 × 2.4018(3년, 12% 연금현가)	=	₩120,000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 × 0.7118(3년, 12% 현가)	=	711,80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165,500* × 0.7118(3년, 12% 현가)	=	117,803
계		₩949,693

* 상환할증금 : ₩1,000,000 × (10% − 5%) × 3.3100(3년, 10% 연금종가) = ₩165,500(16.55%)

(2) 전환권대가 : ₩1,000,000 − 949,693 = ₩50,307

(3)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일 자	유효이자(12%)	액면이자(5%)	상각액	장부가액
20×1년 초				₩949,693
20×1년 말	₩113,963	₩50,000	₩63,963	1,013,656
20×2년 말	121,639	50,000	71,639	1,085,295
20×3년 말	130,205*	50,000	80,205	1,165,500
계	₩365,807	₩150,000	₩215,807	

* 단수차이 조정

(4) 전환사채 전환시 증가되는 주주지분 : ₩1,085,295 × 60% = ₩651,177

(5) 만기상환가액 : ₩400,000 × 116.55% = ₩466,200

10. ④

전환사채 발행시 장부금액 (=일반사채의 현재가치) = ₩40,000 × 2.40183 + 1,198,600 × 0.71178
= ₩949,213

20×2년 초 전환사채 장부금액 = ₩949,213 + 949,213 × 12% − 40,000 = ₩1,023,119

전환시 발행 보통주식수 = ₩600,000 ÷ 3,000(전환가격) = 200주

전환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된 전환사채 장부금액 − 증가하는 자본금) + 전환권대가 중 전환부분
= (₩1,023,119 × 60% − 200주 × 1,000) + 50,787 × 60%
= ₩444,343

(차)	전환사채	600,000	(대)	전환권조정	105,289(1)
	사채상환할증금	119,160(2)		자본금	200,000(3)
				주식발행초과금	413,871

(1) ₩175,481(전환권조정 20×2년 초 잔액) × 60% = ₩105,289
(2) ₩198,600(사채상환할증금 20×2년 초 잔액) × 60% = ₩119,160
(3) 200주 × ₩1,000(액면가액) = ₩200,000

(차)	전환권대가	30,472(4)	(대)	주식발행초과금	30,472(1)

(4) ₩50,787(발행시 계상된 전환권대가) × 60% = ₩30,472

11. ④

₩10,000,000 + ₩10,000,000 × 10% × 25% = ₩10,250,000
사채 액면금액 사채상환할증금 미행사비율

12. ③

이 문제는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인데, 문제의 초점은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조정 중 ₩10,142만큼(아래의 풀이 참조)을 제거하는 부분이다.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상환할증금의 총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만큼 신주인수권조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금액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20×1. 1. 1.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금액(일반사채 현재가치)
= ₩50,000 × 2.48685 + 1,097,400 × 0.75131 = ₩948,830
신주인수권대가 = ₩1,000,000 − 948,830 = ₩51,170
20×1. 12. 31.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금액
= ₩948,830 + 948,830 × 10% − 50,000 = ₩993,713

	행사직전	행사시 제거금액	행사직후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	₩1,000,000
사채상환할증금	97,400	58,440(1)	38,960
신주인수권조정	(103,687)	(10,142)(2)	(93,545)
	₩993,713		₩945,415

(1) ₩97,400 × 60% = ₩58,440
(2) 상환할증금 ₩97,400에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의 차감
{₩97,400 − 97,400 ÷ $(1.1)^2$} × 60% = ₩10,142

<행사시 분개>

(차)	현 금	600,000	(대)	신주인수권조정	10,142
	사채상환할증금	58,440		자 본 금	300,000(1)
				주식발행초과금	348,298
(차)	신주인수권대가	30,702	(대)	주식발행초과금	30,702(2)

(1) ₩600,000 ÷ ₩10,000(행사가액) = 60주
60주 × ₩5,000 = ₩300,000
(2) ₩51,170 × 60% = ₩30,702

[별해] 신주인수권 행사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600,000(\text{주금납입액}) - 300,000(\text{자본금}) + 97,400 \times 60\% \times \frac{1}{1.1^2} + 51,170 \times 60\% = ₩379,000$$

13. ④

(1) A우선주
발행자 임의상환이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음

(2) B우선주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금융부채로 분류. 비누적적이므로 배당요소는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본다.
① 상환우선주 발행가액 : 100주×₩5,000×0.8227 = ₩411,350
② 20×1년 이자비용 : ₩411,350×5% = ₩20,568
③ 20×2년 이자비용 : ₩431,918×5% = ₩21,596
④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 영향 : ₩42,164(= ₩20,568 + 21,596) 감소

Chapter 10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37호, 문단 3)

02.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 아니라 '높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03.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19)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04.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23)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05.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33)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한다. 또한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며,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인식한다.

06. O (기준서 제1037호, 문단 39)

07. O (기준서 제1037호, 문단 52)

08.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53)

전체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금액은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한다.

09. O (기준서 제1037호, 문단 58)

10. O (기준서 제1037호, 문단 45, 60)

11. X (기준서 제1037호, 문단 68)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회피 불가능한 원가란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객관식 문제

01. ①

①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자원유출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확률이 50%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의제의무이며, 의제의무도 충당부채 설정대상이다.

④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업이 당해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서 수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 설정대상이 아니다.

⑤ 화재, 폭발 등의 발생은 그 개연성이 아주 낮으므로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없다.

02. ①

②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기준서 제1037호 문단 47)

③ 충당부채는 ₩2,000,000으로 인식된다.

④ 전체 의무금액(₩2,00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므로 예상변제금액의 자산 인식금액(₩1,000,000)과 충당부채를 상계표시하지 않는다.

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따라서 토지환경정화와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를 유전복구지출에 사용하면 안된다.

03. ⑤

20×3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므로 연도별 제품보증충당부채 설정액 및 제품보증비 지출액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판매한 연도에 인식해야 할 제품보증비 추정액은 매출액의 5%이다.

총추정 제품보증비용	₩1,850,000 × 5% =	₩92,500
실제제품보증비 지출액		(56,000)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		₩36,500

04. ③

(1) 20×2년 말 품질보증비 지출 기대가치

₩144 × 10% + 296 × 60% + 640 × 30% = ₩384

(2) 20×3년 말 품질보증비 지출 기대가치

₩220 × 40% + 300 × 50% + 500 × 10% = ₩288

(3) 20×1년 말 품질보증비 현재가치
₩384 ÷ 1.2 + 288 ÷ 1.2^2 = ₩520

05. ③

(1) 일자별 회계처리

20×3. 1. 1. (차) 구 축 물 1,086,276 (대) 현 금 900,000
복구충당부채 186,276*

* ₩300,000 × 0.62092 = ₩186,276

20×3.12.31.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1,086,276 − ₩86,276) × 1/5 = ₩200,000

(차) 이 자 비 용 18,628 (대) 복구충당부채 18,628

* ₩186,276 × 10% = ₩18,628

(2) 20×3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용
₩200,000 + 18,628 = ₩218,628

06. ③

사례 A : 20×1년 말 현재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20×2년 말 현재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법적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20×2년 말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사례 B : 20×1년 말 현재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0×2년 말에는 이미 벌과금 납부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한다.

사례 C : 20×1년 말 현재 의제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20×2년 말에는 의제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Chapter 11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본장의 내용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법규정에 따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한 OX문제에도 5번부터 7번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법규정에 따라 출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출제된 문제해설에는 문단번호를 표시했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법규정에 따라 출제된 문제해설에는 별도의 문단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01. X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6)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다.

02.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8)

03.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36)

04. O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7)

05. X

주식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반면, 주식분할은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06. O

07. O

객관식 문제

01. ⑤

전환우선주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환권의 가치가 같은 지분상품인 보통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영하므로 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우선주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02. ④

실질적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형식적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없다.

03. ④

(1)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증가액

현금유입액 = 500주×₩15,000 − 500,000(신주발행비) = ₩7,000,000

(2) 유상증자시 회계처리

(차) 현 금	7,500,000		(대) 자 본 금		2,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800,000
			주식발행초과금		4,200,000
(차)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대) 현 금		500,000

04. ③

① 자기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가액만큼 자본 증가(차감항목인 자기주식이 감소하고 가산항목인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

② 지분법이익만큼 이익잉여금(자본)증가, 현금배당수령은 자본변동 없음

③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동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자본변동 없음

④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만큼 기타포괄손익 증가

⑤ 할인발행이더라도 주식발행가액만큼 자본 증가

05. ③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시 자기주식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06. ⑤

<1월 10일>

(차) 자 기 주 식	40,000	(대) 현 금	40,000

<2월 15일>

(차) 현 금	15,000		(대) 자 기 주 식		1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

<7월 10일>

(차) 자 본 금	15,000		(대) 자 기 주 식		30,000
감 자 차 손	15,000				

<8월 20일>

(차) 현 금	15,000		(대) 자 본 금		1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12월 31일>

(차) 집 합 손 익	1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

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 = ₩(40,000)(1.10.) + 15,000(2.15.) + 15,000(8.20.) + 10,000(12.31.)
= ₩0

한편 감자차손의 처분은 결산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에 회계처리한다.

07. ④

(1) 20×1년 초 자본 총계
₩500,000 + 1,000 + 40,000 + 30,000 − 35,000 + 10,000 = ₩546,000

(2) 20×1년 중 거래
A : 자본 불변
B : 재평가잉여금 ₩20,000 감소로 인하여 자본 ₩20,000 감소
C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자본 ₩16,000 증가
D :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 ₩200,000 증가
E : 중간배당으로 자본 ₩1,500 감소, 당기순이익으로 자본 ₩10,000 증가

(3) 20×1년 말 자본 총계
₩546,000 − 20,000 + 16,000 + 200,000 − 1,500 + 10,000 = ₩750,500

08. ⑤

20×6년 말 이익잉여금 = ₩840,000 − 290,000 − 220,000 = ₩330,000
우선주배당금(3년분) = 3,000주 × ₩100 × 10% × 3년 = ₩90,000
우선주배당금에 대한 이익준비금 = ₩9,000
보통주 배당가능한 이익 = (₩330,000 − 90,000 − 9,000)/1.1 = ₩210,000

09. ①

미처분이익잉여금	₩800,000
당기순이익	1,200,000
감채기금적립금 이입	300,000
현금배당	(400,000)
주식배당	(100,000)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250,000)
이익준비금 적립	(4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10,000

* 금전에 의한 배당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므로 주식배당은 제외
₩400,000 × 10% = ₩40,000

10. ②

(1) A사 우선주배당금
₩5,000,000 × 0.05 + (1,350,000 − 250,000 − 500,000) × 1/3 = ₩450,000

(2) B사 우선주배당금
₩5,000,000 × 0.05 × 3년 = ₩750,000

(3) C사 우선주배당금
₩5,000,000 × 0.05 × 2년 + (1,350,000 − 500,000 − 500,000) × 1/3 = ₩616,667

8% 부분참가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경우 ₩650,000 금액이 ₩616,667보다 크기 때문에 C사의 우선주배당금은 ₩616,667이 되는 것이다.
₩5,000,000 × 0.05 × 2년 + ₩5,000,000 × (0.08 − 0.05) = ₩650,000

Chapter 12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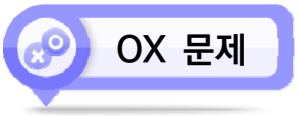

01. O (문단 9)

02. O (문단 29)

03. X (문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킨다.

04. O (문단 B21)

05. X (문단 79)

잔여접근법은 같은 재화나 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거에 그 재화나 용역을 따로 판매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06. X (문단 20)

계약변경이 ①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②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계약가격이 상승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07. O (문단 35)

08. X (문단 B29)

기업이 제공하는 보증이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면 이는 수행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나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면 이는 수행의무이므로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09. **X** (문단 B63)

판매기준 로열티는 접근권이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인식할 수익금액의 변동성이 높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인식의 예외를 적용한다. 후속 판매나 사용 또는 판매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객관식 문제

01. ③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대로 고객은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는 것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02. ④

고객이 이전받은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구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이 그대로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이다.

03. ①

폭넓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변동대가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04. 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05. ③

1분기 매출액 = 20개 × ₩500 = ₩10,000

2분기 매출액 = 50 × ₩400 − 20개 × ₩100(가격할인분) = ₩18,000

06. ①

반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환불부채에 배분하지 않는다.

07. ②

제품의 통제 이전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반품 수량이 확정되면서 갑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게 되므로 제품 통제 시점에서는 계약자산을 ₩20,000 인식한다. 참고로 갑회사가 제품의 통제 이전시점에 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통제 이전 시점>

(차)	계 약 자 산	20,000	(대)	매 출	19,000
				환 불 부 채	1,000(1)
(차)	매 출 원 가	14,250(2)	(대)	재 고 자 산	15,000
	반환제품회수권	750(3)			

(1)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5개를 환불부채로 인식. 5개 × ₩200 = ₩1,000
(2) 95개에 대한 매출원가 = 95개 × ₩150 = 14,250
(3) 고객에게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제품 5개의 원가 = 5개 × ₩150 = ₩750

08. ④

대가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에도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차)	현 금	10,000	(대)	계 약 부 채	10,000

<20×1년 말>

(차)	이 자 비 용	500(1)	(대)	계 약 부 채	500

(1) ₩10,000 × 5% = ₩500

<20×2년 말>

(차)	이 자 비 용	525(2)	(대)	계 약 부 채	525
(차)	계 약 부 채	11,025	(대)	매 출	11,025

(2) ₩10,500 × 5% = ₩525

09. ②

할인액 = (₩90 + 50 + 60) − 160 = ₩40

제품 A와 B를 묶어서 ₩100에 판매하기 때문에 할인액 ₩40을 제품 A, B, C 모두에 배분하지 않고, 제품 A와 B에만 배분한다. 다만 제품의 통제 이전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제품 A와 B의 수익 ₩100 중 제품 A에 배분할 거래가격은 ₩100 × 90/140 = ₩64.3이다.

10. ③

20×1년 진행률 = ₩20,000 / (₩20,000+80,000) = 20%
20×1년 공사수익 = ₩150,000 × 20% = ₩30,000
20×2년 누적진행률 = (₩20,000 + 40,000) / (₩20,000 + 40,000 + 60,000) = 50%
20×2년 공사수익 = ₩170,000 × 50% − 30,000(전기 공사수익) = ₩55,000
20×2년 공사이익 = ₩55,000 − 40,000(20×2년 공사원가) = ₩15,000

11. ⑤

개별 판매가격 반영시 새로운 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20×1. 6. 1. 수익 = 40개 × ₩100 = ₩4,000
20×1. 8. 1. 수익 = 20개 × ₩80 = ₩1,600

12. ①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처리
나머지 재화 60개에 대한 총수익 = 40개 × ₩100 + 20개 × ₩80 = ₩5,600
단위당 수익 = ₩5,600 ÷ 60개 = ₩93.33
20×1. 6. 1. 수익 = 40개 × ₩93.33 = ₩3,733
20×1. 8. 1. 수익 = 20개 × ₩93.33 = ₩1,867

13.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4. ①

부여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 100,000포인트 × ₩0.94 = ₩94,000
20×1년도 판매시 인식할 계약부채 = ₩1,000,000 × (94,000 / 1,094,000) = ₩85,923
20×1년도 교환 포인트에 대하여 인식할 수익 = ₩85,923 × (40,000 / 94,000) = ₩36,563
20×2년도 교환 포인트에 대하여 인식할 수익 = ₩85,923 × (75,000 / 96,000) − 36,563
= ₩30,564

15. ③

갑회사가 수령한 금액 중 ₩3,000은 용역 유형의 보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본다. 따라서 ₩3,000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판매후 3년이 경과된 때부터 2년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으로 대체한다. 20×1년 4월 1일부터 5년간 수익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20×4년 4월 1일부터 2년간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Chapter 13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단기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02.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를 말한다.

03.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04.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05.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06.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07.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08.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23)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09.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27)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10.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52)

11.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2.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근무원가를 당기손익에 인식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에 인식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3.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2)

14.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7)

15.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8)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 있을 때 발생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증감은 보험수리적손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16. O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54)

17. X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의 경우,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 시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된 더 많은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객관식 문제

01. ③

20×2년도 회계처리

<퇴직금 지급>

(차) 확정급여채무	1,000	(대) 사외적립자산	1,000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인식>

(차) 퇴직급여(이자비용)	3,000(1)	(대) 확정급여채무	3,000

(1) ₩30,000(확정급여채무의 기초장부금액. 재무상태표 잔액이 아님) × 10% = ₩3,000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인식>

(차) 사외적립자산	2,200	(대) 퇴직급여(이자수익)	2,200(2)

(2) ₩22,000(사외적립자산의 기초장부금액) × 10% = ₩2,200

<당기근무원가 인식>

(차) 퇴직급여	45,000	(대) 확정급여채무	45,000

<사외적립자산에 출연>

(차) 사외적립자산	32,000	(대) 현금	32,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인식>

(차) 사외적립자산	1,800	(대) 재측정요소	1,800(3)

(3) 재측정요소 인식 전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 ₩22,000 − 1,000 + 2,200 + 32,000 = ₩55,200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 ₩57,000 − 55,200 = ₩1,800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인식>

(차) 확정급여채무	1,000	(대) 보험수리적이익	1,000(4)

(4) 재측정요소 인식 전 확정급여채무 장부금액 = ₩30,000 − 1,000 + 3,000 + 45,000 = ₩77,000
재측정요소 = ₩77,000 − 76,000 = ₩1,000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이익)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76,000 − 57,000 = ₩19,000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타포괄손익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 ₩1,800 + 1,000 = ₩2,800

퇴직급여 = ₩3,000 − 2,200 + 45,000 = ₩45,800

02. ②

1번 해설 참조

03. ⑤

(1) 20×1년 말 회계처리

<당기근무원가>

(차) 퇴 직 급 여 500,000 (대) 확 정 급 여 채 무 500,000

<과거근무원가>

(차) 퇴 직 급 여 300,000 (대) 확 정 급 여 채 무 300,000

<퇴직금 지급>

(차) 확 정 급 여 채 무 1,000,000 (대) 사 외 적 립 자 산 1,000,000

<기여금 납부>

(차) 사 외 적 립 자 산 200,000 (대) 현 금 200,000

<기간경과 이자인식>

(차) 퇴 직 급 여 360,000 (대) 확 정 급 여 채 무 360,000

(차) 사 외 적 립 자 산 336,000 (대) 퇴 직 급 여 336,00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차) 재 측 정 요 소 340,000 (대) 확 정 급 여 채 무 340,000

* ₩4,500,000 + 500,000 + 300,000 + 360,000 − 1,000,000 = ₩4,660,000
  ₩5,000,000 − 4,660,000 = ₩340,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차) 사 외 적 립 자 산 64,000 (대) 재 측 정 요 소 64,000

* ₩4,200,000+200,000+336,000−1,000,000=₩3,736,000
  ₩3,800,000−3,736,000=₩64,000

(2) 20×2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① 퇴직급여

₩500,000 + 300,000 + 360,000 − 336,000 = ₩824,000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824,000 감소

② 기타포괄손실

₩(340,000) + 64,000 = ₩(276,000) 감소

04. ③

(1)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50,000 × 1.06 + 50,000 + 12,000 − 90,000 = ₩131,000

(차) 보험수리적손실 9,000 (대) 확정급여채무 9,000

* ₩140,000 − 131,000 = ₩9,000

(2)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120,000 × 1.06 − 90,000 + 100,000 = ₩137,200

(차) 사외적립자산 8,800 (대) 재측정요소 8,800

* ₩146,000 − 137,200 = ₩8,800

(3) 확정급여자산의 자산인식상한효과

(차) 재측정요소 1,000 (대) 사외적립자산조정 1,000

* ₩6,000 − 5,000 = ₩1,000

(4) 20×1년 기타포괄손익

(−)₩9,000 + 8,800 − 1,000 = (−)₩1,200

05. ②

당기근무원가	₩25,000
과거근무원가	5,000
이자비용	15,000
이자수익	(12,000)
퇴직급여	₩33,000

06. ⑤

(1)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퇴직급여)

① 당기근무원가		₩700,000
② 이자비용	₩500,000 × 0.05 =	25,000
③ 이자수익	₩550,000 × 0.05 =	(27,500)
퇴직급여		₩697,500

(2)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① 확정급여채무

₩500,000×1.05 − 100,000 + 700,000 = ₩1,125,000

₩1,200,000 − 1,125,000 = ₩75,000 (−)기타포괄손익

② 사외적립자산
₩550,000×1.05－100,000＋650,000 = ₩1,127,500
₩1,350,000－1,127,500 = ₩222,500 (＋)기타포괄손익

③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1,350,000－1,200,000 = ₩150,000
₩150,000－100,000(상한) = ₩50,000 (－)기타포괄손익

④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222,500－75,000－50,000 = ₩97,500 증가

Chapter 14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X (기준서 제1102호, 문단 10, 1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02. O (기준서 제1102호, 문단 11, 13)

03. O (기준서 제1102호, 문단 15)

04. X (기준서 제1102호, 문단 21)

시장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시장조건이 달성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05. O (기준서 제1102호, 문단 23)

06. O (기준서 제1102호, 문단 24)

07. X (기준서 제1102호, 문단 32)

용역제공기간 등 가득기간이 존재하면 그 기간 동안 인식한다.

08. X (기준서 제1102호, 문단 35, 38)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분하여 부채요소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요소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09. O (기준서 제1102호, 문단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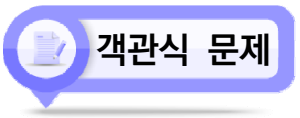

01. ③

20×9년 1월 1일 행사시 회계처리

(차)	현 금	324,000,000(1)	(대)	자 본 금	162,000,000 (2)
	주식선택권	81,000,000(3)		주식발행초과금	243,000,000

(1) 162,000개 × ₩2,000 = ₩324,000,000
(2) 162,000개 × ₩1,000 = ₩162,000,000
(3) 162,000개 × ₩500 = ₩81,000,000

02. ②

20×7년도 보상비용 = 85명 × ₩3,000 × 1/2 = ₩127,500
20×8년도 보상비용 = 75명 × ₩3,000 × 2/3 − 127,500 = ₩22,500

03. ⑤

20×7년 말 보상비용 회계처리

(차)	보 상 비 용	1,365,000(1)	(대)	장기미지급비용	1,365,000

(1) (100명−5−4) × 100개 × ₩300 × 1/2 = ₩1,365,000

20×8년 말 회계처리

① 당해연도 보상비용 인식

(차)	보 상 비 용	1,451,000(1)	(대)	장기미지급비용	1,451,000

(1) (100명 − 5 − 7) × 100개 × ₩320 × 2/2 − 1,365,000 = ₩1,451,000

② 주가차액보상권 행사

(차)	장기미지급비용	1,600,000(2)	(대)	현 금	1,550,000(1)
				보 상 비 용	50,000

(1) 50명 × 100개 × ₩310 = ₩1,550,000
(2) 50명 × 100개 × ₩320 = ₩1,600,000

20×8년 말 보상비용
₩1,451,000 − 50,000 = ₩1,401,000

04. ①

(1) 20×1년 보상비용
10명 × 10단위 × ₩20 × 1/2 = ₩1,000

(2) 20×2년 보상비용

10명 × 10단위 × ₩20 × 2/2 − 1,000 = ₩1,000

(3) 20×3년 보상비용

주식결제형은 가득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보상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05. ⑤

(1) 20×1년 보상비용

10명 × 10단위 × ₩30 × 1/2 = ₩1,500

(2) 20×2년 보상비용

10명 × 10단위 × ₩25 × 2/2 − 1,500 = ₩1,000

(3) 20×3년 보상비용

5명 × 10단위 × (₩30 − 10) = ₩1,000

5명 × 10단위 × ₩35 − (2,500 − 1,000) = ₩250

참고로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 12. 31>

(차)	보 상 비 용	1,500	(대)	장기미지급비용	1,500

<20×2. 12. 31>

(차)	보 상 비 용	1,000	(대)	장기미지급비용	1,000

<20×3. 1. 1>

(차)	장기미지급비용	1,250	(대)	현 금	1,000
				보 상 비 용	250

<20×3. 12. 31>

(차)	보 상 비 용	500	(대)	장기미지급비용	500

* 5명 × 10단위 × ₩35 − (2,500 − 1,250) = ₩500

06. ①

(1)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 : 1,400주 × ₩360 = ₩504,000

(2) 현금결제방식의 공정가치 : 1,000주 × ₩400 = ₩400,000

(3) 복합금융상품 내 자본요소 공정가치 : ₩504,000 − 400,000 = ₩104,000

Chapter 15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7)

02.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

03. X (기준서 제1012호, 문단 24)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과 무관하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04.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37)

05. X (기준서 제1012호, 문단 49)

한계세율이 아니라 평균세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06.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53)

07.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60)

세율이나 세법의 변경,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재검토,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의 장부금액이 변경된다.

08. O (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

09. X (기준서 제1012호, 문단 74)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계한다. 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객관식 문제

01. 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02. ④

	20×2년 말 일시적차이	20×3년 말 일시적차이
FVPL 금융자산평가손실	₩40,000	—
미수이자	(20,000)	₩(10,000)

20×3년 말 이연법인세 잔액 = ₩(10,000) × 20% = ₩(2,000)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03. ③

(1) 20×4년 말 당기법인세부채

(₩2,000,000 + 100,000 + 50,000 − 20,000) × 25% = ₩532,500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 ₩30,000 × 28% + 20,000 × 30% = ₩14,400

이연법인세부채 : ₩20,000 × 28% = ₩5,600

(3) 20×4년 법인세비용

(차) 법인세비용	523,700	(대) 당기법인세부채	532,500
이연법인세자산	14,400	이연법인세부채	5,600

04. ②

(1) 20×1년 법인세부담액 계산

(₩1,000,000 + 30,000 + 10,000 + 250,000* − 250,000*) × 30% = ₩312,000

* FVOCI 금융자산평가손실 ₩250,000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으므로 회계이익 ₩1,000,000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할 금액은 없으나,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금액만큼 빼고 더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2)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계산

	20×1년 말 현재 일시적차이	일시적차이 소멸 20×2년 이후	20×1년 말 현재 이연법인세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	₩(10,000)	₩2,000(자산)
FVOCI 평가손실	250,000	(250,000)	50,000(자산)
세 율		20%	

(3) 20×1년 말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차)	법 인 세 비 용	312,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312,000
(차)	이연법인세자산	52,000	(대)	법 인 세 비 용	52,000
(차)	법 인 세 비 용	50,000	(대)	FVOCI 평가손실	50,000

∴ 법인세비용 = ₩312,000 − 52,000 + 50,000 = ₩310,000

05. ⑤

(1) 회계처리

<20×6. 12. 31>

(차)	법 인 세 비 용	800,000	(대)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800,000(1)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1,600,000(2)		법 인 세 비 용	1,600,000

(1)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 ₩4,000,000 × 20% = ₩800,000
(2)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 ₩8,000,000 × 20% = ₩1,600,000

(2) 재무제표 공시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한 총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공시한다.

(3) 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4,000,000)
법 인 세 수 익	800,000
당 기 순 손 실	₩(3,200,000)

06. ⑤

(1) 연도별 회계상 감가상각비(연수합계법)와 세무상 감가상각비(정액법)의 차이

	20×3년	20×4년	20×5년	20×6년
연수합계법	₩96,000[*1]	₩72,000[*2]	₩48,000[*3]	₩24,000[*4]
정액법	60,000[*5]	60,000[*5]	60,000[*5]	60,000[*5]
차이	₩36,000	₩12,000	₩(12,000)	₩(36,000)

*1. ₩240,000 × 4/10 = ₩96,000
*2. ₩240,000 × 3/10 = ₩72,000
*3. ₩240,000 × 2/10 = ₩48,000
*4. ₩240,000 × 1/10 = ₩24,000
*5. ₩240,000 × 1/ 4 = ₩60,000

(2) 20×3년 말 일시적차이 잔액 및 이연법인세 계산

		일시적차이 소멸		
	20×3년 말	20×5년	20×6년	20×3년 말 현재 이연법인세
감가상각비한도초과	₩36,000*	₩(12,000)	₩(24,000)	₩10,800(자산)
세율		30%	30%	

* 20×3년 말 일시적차이는 20×4년 말 일시적차이와 함께 20×5년부터 소멸되는데, 먼저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먼저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20×5년과 20×6년에 각각 ₩12,000과 ₩24,000이 소멸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3) 20×3년도 법인세부담액
= {₩600,000 + 55,000(접대비 한도초과) + 36,000(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25%
= ₩172,750

(4) 20×3년도 법인세비용
= ₩172,750 − 10,800(이연법인세자산 증가) = ₩161,950

Chapter 16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15)

02.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17)

이익배분으로 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03.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21)

최종 이자발생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04.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24)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기간의 경과에는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않는다.

05.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27)

총증자주식수 중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구분하여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수만 소급하여 가중평균한다.

06.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36)

07.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46)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이 보통주식의 평균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반희석효과가 있다.

08. X (기준서 제1033호, 문단 48)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되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취급한다.

09.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53)

10.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58)

11.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62)

12. O (기준서 제1033호, 문단 64)

객관식 문제

01. ④

1.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672,000 − (5,000주 × 1.1 × ₩1,000 × 10% + 1,000주 × 1.1 × ₩1,000 × 10% × 9/12)
   = ₩1,039,500

2. 유통보통주식수
   유상증자시 유입된 현금 = 1,800주 × ₩1,000 = ₩1,800,000
   시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능 주식수 = ₩1,800,000 ÷ 1,800 = 1,000주
   무상증자 주식수 = 1,800주 − 1,000 = 800주
   무상증자 주식수 800주를 기초주식수(9,000주)와 시가유상증자 주식수(1,000주)비율로 배분
   기초주식수 배분 = 800주 × 9,000/10,000 = 720주
   시가유상증자주식수 배분 = 800주 × 1,000/10,000 = 80주
   7월 1일 무상증자 주식수 = (9,000주 + 1,800) × 10% = 1,080주
   기초주식수에 소급할 무상주식수 = (9,000+720)×10% = 972주
   4월 1일로 소급할 무상주식수 = (1,000 + 80) × 10% = 108주
   ∴ 유통보통주식수 = (9,000주 + 720 + 972) × 12/12 + (1,000주 + 80 + 108)
   × 9/12 − 2,000주 × 3/12 = 11,083주

3. 기본주당이익
   ₩1,039,500 ÷ 11,083주 = ₩94

02. ③

1. 유통보통주식수
   유상증자시 유입된 현금 = 300주 × ₩40,000 = ₩12,000,000
   시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능 주식수 = ₩12,000,000 ÷ 60,000 = 200주
   무상증자 주식수 = 300주 − 200 = 100주

   무상증자 주식수 100주를 기초주식수(1,800주)와 시가유상증자 주식수(200주)비율로 배분
   기초주식수 배분 = 100주 × 1,800/2,000 = 90주
   시가유상증자주식수 배분 = 100주 × 200/2,000 = 10주

2. 기본주당이익
   ₩2,450,000 ÷ 1,960주 = ₩1,250

03. ④

(1)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분자)

₩710,000,000 − 50,000주 × ₩10,000 × 10% = ₩660,000,000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분모)

500,000주 × 2 × 12/12 + 100,000 × 2 × 9/12 − 200,000 × 3/12 = 1,100,000주

(3) 기본주당순이익

₩660,000,000 / 1,100,000주 = ₩600

04. ①

(1) 기본주당이익 : (₩12,000,000 − 4,000주 × ₩500 × 8%) / 10,000주 = ₩1,184

(2) 희석주당이익 : ₩12,000,000 / (10,000주 + 2,000주) = ₩1,000

05. ②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 = {1,000주 − 1,000주 × ₩4,000(행사가격) ÷ 5,000(평균시가)} × 9/12*
= 150주

* 신주인수권은 20×1. 4. 1.에 발행되었으므로 9개월간 가중평균

희석주당이익 = ₩10,000,000 ÷ (5,000주 + 150) = ₩1,942

06. ②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발행이 모두 기초시점이 아니라 기중시점이므로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 계산시 적절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의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 = {2,000주 − 2,000주 × (6,000 / 10,000)} × 6/12
= 400주

전환사채의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 = 600주 × 9 / 12 = 450주

전환사채 이자비용의 조정 = ₩300,000 × (1 − 20%) = ₩240,000

	당기순이익	보통주식수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200,000	2,000주	₩600
신주인수권	−	400	
	1,200,000	2,400	₩500
전환사채	240,000	450	
	₩1,440,000	2,850주	₩505(반희석)

∴ 희석주당이익 = ₩500

07. ②

(1) 기본주당순이익

₩7,200,000 / 1,000주×1.2×12/12 = ₩6,000

(2) 희석주당순이익

₩7,200,000 / (1,000주×1.2×12/12 + x주) = ₩5,760

∴ x = 50주

주의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기 때문에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분자에 이자비용을 가산하지 않는다. 만약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였다면 상환할증금관련 신주인수권조정상각으로 인식된 이자비용을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분자에 세후금액으로 가산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3) 신주인수권의 잠재적보통주식수 계산

100주 × ₩2,000/평균시가 = 50주

∴ 평균시가 = ₩4,000

Chapter 17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O (기준서 제1021호, 문단 12)

02. X (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03. O (기준서 제1021호, 문단 28)

04. X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0)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5. O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5)

06. O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9, 42)

객관식 문제

01. ③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0)

02. ③

(1)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차이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시 발생한다. 비화폐성항목 중 기말에 공정가치평가 하는 항목인 경우 공정가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외환차이 부분도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결국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3개 항목의 외환차이를 계산하면 된다.

(2) 매출채권(자산)
$\$20 \times ₩1{,}000 - 22{,}000 = ₩(2{,}000)$ 손실

(3) 매입채무(부채)
$\$30 \times ₩1{,}000 - 28{,}000 = ₩2{,}000$ 손실

(4) 차입금(부채)
$\$80 \times ₩1{,}000 - 85{,}000 = ₩(5{,}000)$ 이익

(5)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5{,}000 - 2{,}000 - 2{,}000 = ₩1{,}000$ 이익증가

03. ②

(1) 기능통화로 환산된 취득원가 : $\$100 \times ₩1{,}000 = ₩100{,}000$

(2) 기능통화로 환산된 순실현가능가치 : $\$96 \times ₩1{,}050 = ₩100{,}800$

(3) 기말 저가재고는 ₩100,000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0이다.

04. ④

$\$2{,}400 \times ₩1{,}000 - (\$950 \times ₩1{,}000 + \$1{,}000 \times ₩900 + \$150 \times ₩940 + \$300 \times ₩980)$
$= ₩115{,}000$ 외환차이

Chapter 18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X (기준서 제1116호, 문단 5)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02. X (기준서 제1116호, 문단 26)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내재이자율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03. O (기준서 제1116호, 문단 27)

04. O (기준서 제1116호, 문단 24)

05. X (기준서 제1116호, 문단 39)

리스부채 재측정으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면서 사용권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용권자산보다 더 많은 리스부채를 감소시킬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6. X (기준서 제1116호, 문단 44)

리스변경시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경우에만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07. O (기준서 제1116호, 문단 64)

08. O (기준서 제1116호, 문단 70)

09. **X** (기준서 제1116호, 문단 71)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을 매출로 인식한다.

10. **O** (기준서 제1116호, 문단 83)

객관식 문제

01. ③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금액이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된다.

02. ⑤

고정리스료의 현재가치	₩100,000 + 100,000 × 1.85941(기간 2, 5%, 연금현가계수) =	₩285,941
리스 인센티브		(20,000)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
복구추정원가 현재가치	₩30,000 × 0.86384(기간 3, 5%, 현가계수) =	25,915
사용권자산 인식금액		₩296,856

03. ④

리스부채 최초 인식금액 = ₩100,000 × 2.72325(기간 3, 5%, 연금현가계수) = ₩272,325
20×1년도 리스부채 이자비용 = ₩272,325 × 5% = ₩13,616
사용권자산 최초 인식금액 = ₩272,325 + 10,000 = ₩282,325
사용권자산 상각비 = ₩282,325 ÷ 3년 = ₩94,108
비용 합계 = ₩13,616 + 94,108 = ₩107,724

04. ③

계약 변경으로 리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리스대가가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영하므로 기존 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을 별도 리스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기존 리스계약>
20×1년 초 리스부채 = ₩100,000 × 4.32948(기간 5, 5%, 연금현가계수) = ₩432,948
20×2년 초 리스부채 장부금액 = ₩432,948 + 432,948 × 5% − 100,000 = ₩354,595
20×3년 초 리스부채 장부금액 = ₩354,595 + 354,595 × 5% − 100,000 = ₩272,325
20×4년 초 리스부채 장부금액 = ₩272,325 + 272,325 × 5% − 100,000 = ₩185,941
20×4년도 이자비용 = ₩185,941 × 5% = ₩9,297

<별도 리스>

20×4년 초 리스부채 = ₩40,000 × 1.83339(기간 2, 6%, 연금현가계수) = ₩73,336

20×4년도 이자비용 = ₩73,336 × 6% = ₩4,400

이자비용 합계 = ₩9,297 + 4,400 = ₩13,697

05. ④

리스에 수정리스료를 산정하고, 수정 할인율로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

20×4년 초 현재 재측정한 리스부채

= ₩140,000 × 1.83339(기간 2, 6%, 연금현가계수) = ₩256,675

20×4년도 이자비용 = ₩256,675 × 6% = ₩15,401

06. ④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확실한 매수선택권(염가매수선택권이 아님)의 행사가격을 포함한다.

07. ⑤

20×1년 초 리스채권 = ₩100,000 × 2.67301(기간 3, 6%, 연금현가계수)

+30,000(보증, 무보증잔존가치) × 0.83962(기간 3, 6%, ₩1의 현가계수)

= ₩292,490

20×1년도 이자수익 = ₩292,490 × 6% = ₩17,549

08. ③

20×2년 초 리스채권 = ₩292,490 + 292,490 × 6% − 100,000 = ₩210,039

20×2년 초 무보증잔존가치 추정 변경 반영 리스채권

= ₩100,000 × 1.83339(기간 2, 6%, 연금현가계수)

+24,000(보증, 무보증잔존가치) × 0.89000(기간 2, 6%, ₩1의 현가계수)

= ₩204,699

리스채권 손상차손 = ₩204,699 − 210,039 = (−)₩5,340

(−)₩5,340은 무보증잔존가치 추정 감소액 ₩6,000에 0.89000(기간 2, 6%, ₩1의 현가계수)를 곱해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09. ①

매출액 = Min(공정가치, 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료의 현재가치

= ₩100,000 × 2.67301(기간 3, 6%, 연금현가계수)

+30,000(보증잔존가치) × 0.83962(기간 3, 6%, ₩1의 현가계수)

= ₩292,490

따라서 ₩292,490이 공정가치 ₩300,000보다 적으므로 매출액은 ₩292,490

매출원가 = 자산 취득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200,000 − 20,000(무보증잔존가치) × 0.83962(기간 3, 6%, ₩1의 현가계수)

= ₩183,208

10. ②

운용리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11. ①

<건물 판매시 회계처리>

(차)	현 금	13,000	(대)	건 물	10,000
	사용권자산	5,385[2]		금융부채	7,000[1]
				이전된권리차익	1,385[3]

(1) 리스료의 현재가치

(2) 판매자산 장부금액 × (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자산의 공정가치) = ₩10,000 × 7,000/13,000 = ₩5,385

(3) 대차일치 금액으로 결정. 다음과 같이 별도 계산 가능

판매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판매자산 공정가치 − 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자산 공정가치

= ₩3,000 × (13,000 − 7,000)/13,000 = ₩1,385

Chapter 19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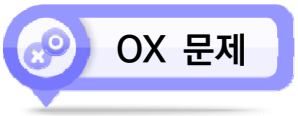

01.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02. X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6)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03.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22)

04. X (기준서 제1008호, 문단 24)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05. X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06.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6)

07.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42)

08. O (기준서 제1008호, 문단 45)

객관식 문제

01. ①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02. ⑤

①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②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였던 상황을 우발부채로 잘못 공시하였다가 이를 충당부채로 다시 인식한 것은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오류수정이므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03. ③

(1) 기초이익잉여금 : 기초재고자산은 전년도말 기말재고이므로 전기 기말재고 금액이 ₩160,000 감소하면 전기순이익이 ₩160,000 감소하여 기초이익잉여금도 감소한다.

(2) 20×6년 당기순이익 : ₩160,000 − 140,000 = ₩20,000 증가

04. ④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진법을 적용한다.

20×6년 초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 (₩90,000,000 − 9,000,000) × (5/15 + 4/15 + 3/15)
= ₩64,800,000

20×6년 초 기계장치 장부금액 = ₩90,000,000 − 64,800,000 = ₩25,200,000

20×6년도 감가상각비 = (₩25,200,000 − 6,000,000) × 3/6(잔존내용연수 3년) = ₩9,600,000

05. ⑤

<20×7년 회계변경이 없었을 경우 회계처리>

(차) 감 가 상 각 비 1,8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10,000,000 − 1,000,000) × 3/15 = ₩1,800,000

<20×7년 회계변경을 할 경우 회계처리>

(차) 감 가 상 각 비 1,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300,000

* (₩10,000,000 − 5,400,000 − 700,000) × 1/3 = ₩1,300,000

(1) 20×7년 당기순이익 : ₩7,000,000 + 500,000 = ₩7,500,000

(2) 20×7년 말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00,000 + 7,500,000 = ₩19,500,000

06. ④

(1) 오류사항

외상매입금과 매입이 누락되었고, 기말재고자산과 매입의 감소분개가 누락되었다. 즉, 다음의 두 가지 분개가 누락된 것이다.

(차)	매 입	×××	(대)	매 입 채 무	×××
(차)	재 고 자 산	×××	(대)	매 입	×××

따라서, 매입금액에 영향이 없다. 이는 매출원가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다.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매입채무가 과소계상된 것이다. 즉, 자산과 부채가 동일금액 과소계상되고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2)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자본은 불변이므로 낮아진다.

07. ③

이익수정정산표

	20×2년	20×3년
수정전 세전이익	₩200,000	₩150,000
1. 재고자산의 오류		
20×2년 기말재고 과대계상	₩(10,000)	₩10,000
20×3년 기말재고 과대계상		(4,000)
2. 선급비용의 오류		
20×2년	2,000	(2,000)
20×3년		3,000
3. 유형자산의 오류		
20×2년	30,000	
감가상각비	(5,000)	(5,000)
정확한 세전이익	₩217,000	₩152,000

08. ②

이 문제에서는 오류수정 후 20×2년도 기말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즉, 20×1년도 기말이익잉여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0×0년 당기순이익	20×1년 당기순이익	20×1년 말 이익잉여금	20×2년 당기순이익
선급임차료				
20×1년도		₩(180,000)	₩(180,000)	₩180,000
재고자산				
20×0년도	₩150,000	(150,000)	–	
20×1년도		200,000	200,000	(200,000)
기계장치				
수선비		100,000	100,000	
감가상각비		(20,000)	(20,000)	(20,000)
수정금액			₩100,000	₩(40,000)

Chapter 20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01. X (기준서 제1007호, 문단 14)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02.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15)

03.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16)

04.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25)

05. X (기준서 제1007호, 문단 33)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보아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나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06. X (기준서 제1007호, 문단 34)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07.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39)

08.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42)

09. O (기준서 제1007호, 문단 48)

객관식 문제

01. ④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서 제1007호 문단 7)

02. ④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적으려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또는 손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①의 경우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을,

②의 경우는 지분법손실을,

③의 경우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법인세비용을,

⑤의 경우는 제품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면서 제품보증비를 인식한 것이므로 모두 현금흐름은 수반하지 않으면서 비용 또는 손실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④의 경우는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이 동시에 증가한다.

03. ③

대여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미회수채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는 조정을 한다. 그러나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매출채권의 증감액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므로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begin{aligned}\text{영업활동 현금흐름} &= \text{당기순이익}(₩200{,}000) - \text{금융자산처분이익}(20{,}000)\\ &\quad + \text{감가상각비}(50{,}000) + \text{매출채권감소}(20{,}000)\\ &\quad + \text{매입채무 증가}(10{,}000) - \text{유형자산처분이익}(25{,}000)\\ &\quad + \text{대여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20{,}000)\\ &= ₩255{,}000\end{aligned}$$

04. ⑤

당기순이익	x
재고자산 감소액	₩100,000
감가상각비	150,000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영업활동 현금흐름	₩2,000,000

$\therefore$ 당기순이익(x) = ₩2,050,000

05. ⑤

1. 고객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매출액	₩3,000,000
외화환산이익	20,000
외환차익	60,000
매출채권의 감소	50,000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	₩3,130,000

2. 공급자에 대한 현금흐름

매출원가	₩(1,200,000)
외화환산손실	(10,000)
재고자산의 감소	100,000
매입채무의 감소	(20,000)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	₩(1,130,000)

3. 종업원에 대한 현금흐름

급 여	₩(400,000)
보상비용	20,000
미지급급여의 증가	30,000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액	₩(350,000)

06. ②

(1)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

매출원가	₩(3,200,000)
외화환산이익	32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250,000)
선급금의 증가	(120,000)
재고자산의 감소	390,000
매입채무의 증가	430,000
현금유출액	₩(2,430,000)

(2)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액

급 여	₩(1,200,000)
주식보상비용	140,000
선급급여의 감소	210,000
미지급급여의 감소	(170,000)
현금유출액	₩(1,020,000)

07. 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가감항목 :	감가상각비	₩4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
	이자비용	25,000
	매출채권의 증가	(15,000)
	대손충당금의 증가	5,000
	재고자산의 감소	4,000
	매입채무의 감소	(6,00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50,000
이자비용 현금유출액		(25,000)
법인세비용 현금유출액		(25,000)*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200,000

* (−)₩30,000−5,000+10,000=(−)₩25,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7,000

08. ①

(1) 일자별 회계처리

<20×1. 중>

(차)	기계장치	100,000	(대)	현금	100,000

<20×1년 기계장치 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00	(대)	기계장치	80,000
	현금	55,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

<20×1. 12. 31>

(차)	감가상각비	3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5,000

(2) 20×1년 투자활동 현금유출액 : ₩55,000−100,000=₩(45,000)

09. ①

(1)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00,000(공장설비 처분)−600,000(유형자산 취득) = ₩(200,000) 유출

(2)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50,000(유상증자)+300,000(장기차입금차입)−200,000(현금배당지급) = ₩350,000 유입

Chapter 21 해답 및 해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MEDIATE ACCOUNTING

OX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01. X (기준서 제1020호, 문단 7)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및 보조금의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02. X (기준서 제1020호, 문단 12)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지 않는다.

03. O (기준서 제1020호, 문단 18)

04. O (기준서 제1020호, 문단 20)

05. O (기준서 제1020호, 문단 23)

06. X (기준서 제1020호, 문단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07. O (기준서 제1020호, 문단 29)

08. X (기준서 제1020호, 문단 32)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01. X (기준서 제1105호, 문단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더라도 매각예정분류조건을 충족하여야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02. O (기준서 제1105호, 문단 13)

03. X (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04. O (기준서 제1105호, 문단 17)

05. X (기준서 제1105호, 문단 2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계속하여 인식한다.

06. O (기준서 제1105호, 문단 28)

07. O (기준서 제1105호, 문단 37)

08. X (기준서 제1105호, 문단 38)
상계하지 않고 각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01. O (기준서 제1106호, 문단 10)

02. O (기준서 제1106호, 문단 12, 15)

03. O (기준서 제1106호, 문단 17)

04. X (기준서 제1106호, 문단 18)
탐사평가자산은 회수가능액을 측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01. X (기준서 제1010호, 문단 3)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도 포함된다.

02. O (기준서 제1010호, 문단 9)

03. X (기준서 제1010호, 문단 12)

보고기간말 현재의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04. X (기준서 제1010호, 문단 14)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01. X (기준서 제1034호, 문단 14)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02. X (기준서 제1034호, 문단 23)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중요성을 판단한다.

03. O (기준서 제1034호, 문단 28)

04. X (기준서 제1034호, 문단 37)

계절적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01. **X** (기준서 제1108호, 문단 5)

신규영업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02. **O** (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

03. **O** (기준서 제1108호, 문단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01. **O** (기준서 제1024호, 문단 12)

02. **O** (기준서 제1024호, 문단 17)

객관식 문제

01. ②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02. 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03. ④

(1) 일자별 회계처리

<20×1. 1. 1.>

(차)	기계장치	100,000	(대)	현금	100,000
(차)	현금	100,000	(대)	정부보조금	100,000
(차)	기계장치	520,000	(대)	현금	560,000
	AC 금융자산	40,000			

<20×1. 12. 31.>

(차)	감가상각비	104,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4,000

* (₩520,000－0) ÷ 5년 = ₩104,000

(차)	정부보조금	20,000	(대)	감가상각비	20,000

* ₩100,000 × 104,000/520,000 = ₩20,000

(2) 20×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 ₩520,000－104,000－80,000 = ₩336,000

(3) 20×4년 특허권 취득원가 : ₩20,000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대체하지 않음)

04. ②

(1) 20×3년 1월 1일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	(대)	기계설비	2,000
	정부보조금	300		현금	400
	토지	1,4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2) 20×3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05. ①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104의 (1), (2) 및 문단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가)시킨다.

06. ⑤

(1) 20×1년 총포괄손익 : ₩5,700,000－5,000,000 = ₩700,000

(2) 손상차손 배분 후 유형자산 Ⅰ의 장부금액

₩1,000,000－300,000* × 1,000,000/3,000,000 = ₩900,000

* (₩5,400,000－5,000,000)－100,000(손상차손 영업권 배부액)＝₩300,000

07. ②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1106.10).

08. ④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09. ⑤

보고기간말 이후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다.

10. ④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추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④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뿐만 아니라 당해 중간기간에 대해서도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준서 제1034호 문단 20) 따라서 A 문항만 틀린 문항이다.

12. ⑤

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기준서 제1108호 문단 13).

(1)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분 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2)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
   (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

(3)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1) 부문수익 합계액 ₩1,000,000×10%＝₩100,000 이상인 영업부문 : 가, 나, 라, 마

(2) 부분당기손익 기준 : Max[₩40,000, ₩15,000] = ₩40,000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가, 나, 다, 라, 마, 바

(3) 부문자산 합계액 ₩900,000×10%＝₩90,000 이상인 영업부문 : 가, 나, 마

13. ③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자녀 및 배우자

(2) 배우자의 자녀

(3)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